2024년 8월호

정운 관세법인 소식지

Thank you

늘 함께 성장하는 '우리'

정운관세법인

TEL: 02-511-5926 DOC@JWCCS.COM

1) 관세동향

1. EU, 한국 등 4개국 산 '에폭시수지' 반덤핑조사 개시

EU 집행위원회가 한국, 중국, 대만, 태국산 에폭시수지(Epoxy Resin)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실시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역외국의 에폭시수지 품목 덤핑에 따른 EU 시장 점유 확대로 역내 산업이 실제 피해를 입었다는 제소기업의 주장이 있고, 내부 검토 결과 덤핑 및 피해사실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해 7월 1일 관보를 통해 반덤핑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에폭시수지는 내열성과 접착력이 뛰어나 전자제품, 항공우주, 선박・자동차용 도료, 반도체, 풍력 에너지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합성수지다.

이번 EU 집행위원회의 조사 대상 품목의 HS CODE는 2910.90(조제 점결제, 기타 화학공업애 따른조재품), 3907.30(에폭시수지), 2910.90(에폭시페놀, 에폭세에테르, 에폭시드, 에폭시알코올 등) 등이다.
(세부 품목 코드(TARIC)은 2910900005, 3824999296, 3824999310, 9307300005, 3907300020, 3907300080 등)
이번 규제 대상인 한국산 에폭시수지의 작년 EU 수입을 살펴보면 품목별로 수입 점유 1~8위를 차지하고 있다.
먼저, HS 3824.99 품목의 경우 약 34억 달러 규모를 수입해 50% 점유율로 우리나라가 수입국 1위이다.
이어, HS 3907.30은 총 1억 6,900만 달러로 22.8%의 점유율을 나타내며 수입 2위를 기록했으며,
HS 2910.90은 약 170만 달러로 2.65%의 점유율을 보이며 8위를 기록했다.
덤핑사실 및 산업피해 유무에 대한 EU 집행위원회의 조사대상 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이며, 이외에도 2020년 1월 1일 이후 품목 수입 추이 등이 검토된다.

2) 관세동향

이번 조사 개시에 따라 관련 기업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7일 이전(8월 6일)까지 업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7월 15일까지 EU 집행위원회로 공청회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에폭시수지에 대해 원자재 왜곡 여부를 조사할 예정으로 중국 생산기업에 7월 15일까지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및 에너지 관련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KOTRA는 "EU 반덤핑조사의 경우 기업이 제출하는 의견과 증거가 집행위원회의 덤핑 여부 판정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며 "관련 기업은 적극적으로 조사에 참여해 역내 산업피해가 한국산 제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적극 소명하고, 반덤핑 무혐의 또는 관세 인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4월 24일 미국 상무부 또한 한국산 에폭시수지 품목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개시를 발표하는 등 해당 품목에 대한 다른 국가의 규제 움직임도 보이는 추세로 이 같은 동향에 대한 주의와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엿다.

2. 전략물자 판정 점검 자료 제출 1차 위반 시 1,000만원 과태료 부과

정부가 무역안보관리원의 기능 강화를 위해 무역안보 홍보 및 컨설팅,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화 지원 등의 기능을 신설한다.
또, 전략물자 판정 및 허가 사후관리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신설되거나 부과한다가 상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1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대외무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략물자의 지정 범위, 무역안보관리원의 기능, 과태료 부과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외무역법] 제 19조 개정에 따라 국제수출통제체제에 준하는 다자간 공조의 범주를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전략물자 지정 근거를 추가한다.
이에 국제 수출통제체제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 다수의 회원국이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거나 지지하는 등 공조가 필요한 경우를 전략물자 지정 근거로 추가해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내실화 할 수 있게 된다.
이어 무역안보관리원 기능에 무역안보 홍보 및 컨설팅을 추가하고,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 지원 등 기능을 신설한다. 다만, 기존 법에서 규정하던 무역제한 특별조치 정보 제공 기능은 시행령으로 이관한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이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3) 관세동향

아울러 전략물자 판정을 비롯한 허가의 사후관리를 강화해 무허가 수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 기준을 정비한다.

이는 [대외무역법] 제59조 개정으로 전략물자 판정 및 허가의 사후관리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신설되거나 과태료 부과 한도가 상향돼 구체적인 과태료 처분 기준의 마련이 필요해 정비하게 되었으며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자가판정을 하거나 자가판정을 한 후 그 결과를 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 기존 1차 위반 시 25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이를 각각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0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자가판정을 한 경우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 제2항제1의2호	500	700	1,000

◆ 판정 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 1차 위반 시 1,000만원, 2차 위반 시 1,500만원, 3차 위반 시 2,00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사. 법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법 제59조 제1항제3의2호	1,000	1,500	2,000

◆ 이와 함께 허가 면제를 받았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해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를 신설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차. 제19조의6제3항에 따른 허가 면제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59조 제2항제1호	500	700	1,000

1) FTA 이슈

1. 한-미 FTA 섬유 직물 원산지 기준 개정 (8월 1일 발효)

일부 섬유 직물에 대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기준 개정안이 8월 1일 국내에서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일 구리암모늄 레이온 직물 원산지 기준 개정을 위한 법적・절차적 요건을 완료했다는 서면 통보를 교환・완료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합의서에는 "양국 정부가 합의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법적 절자 완료를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고, 마지막 통보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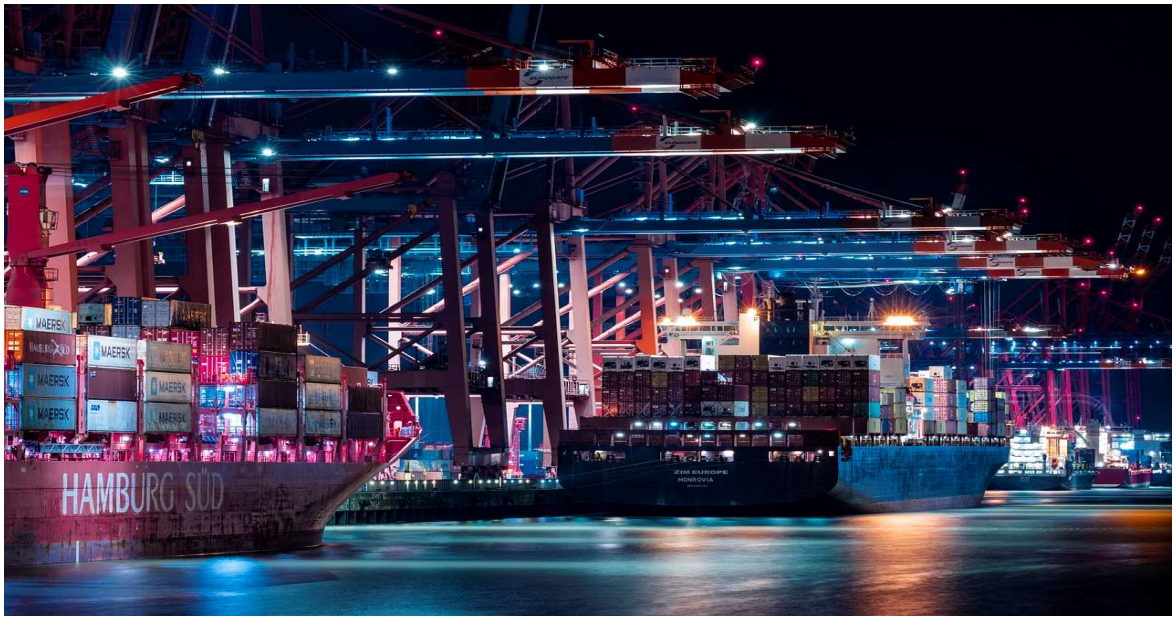

韓・美 양국은 지난 2018년 한-미 FTA 개정 협상 시 역내 원료 공급 부족 품목인 구리암모늄 레이온 직물에 대해 역외산 원사 사용이 가능하도록 원산지 기준을 개정하는데 합의하였으며, 이후 양국 간 개정 논의를 거쳐 이번에 개정절차가 완료됐다.

한-미 FTA 섬유 직물의 원산지 기준은 원사부터 역내산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 발효로 한국산이나 미국산이 아닌 역외산 구리암모늄 레이온사를 사용해 한국에서 제조한 직물도 미국에 수출 시 한국산으로 인정돼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리암모늄 레이온 직물은 목화씨에 붙어있는 잔털섬유를 재생해 만든 고급 직물로, 촉감과 광택이 우수해 고가의 드레스와 셔츠, 안감 등에 사용된다.

산업부는 "對美 수출 시 가격 경쟁력이 확보돼 우리 섬유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2. 韓 WCO 정책위원회 · 재정위원회 위원국으로 연임

우리나라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세계관세기구(WCO) 제143/144차 총회에서 정책위원회 및 재정위원회 위원국의 연임이 결정됐다. 임기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2년이다. 정책위원회는 WCO의 운영·활동 및 정책 전반에 관한 실질적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WCO의 가장 중추적인 회의체이며 재정위원회는 예산 조달·지출·회계감사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WCO의 핵심 회의체 중 하나이다.

WORLD CUSTOMS ORGANIZATION

우리나라는 정책위원회의 경우 2014년부터, 재정위원회는 2012년부터 연임해왔다.
WCO 전체 회원국 중 10년 이상 정책위원회 및 재정위원회를 모두 연임한 국가는 한국, 미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4개국이 유일하다.
그 간 우리나라는 정책위원회 및 재정위원회 위원국으로서 전자원산지증명서(e-C/O) 표준지침 제정, 가상현실(VR) 수입물품 검사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확대, WCO 보유 품목분류 결정문 전산화 지원 펠로우십 프로그램 등을 통한 개발도상국 능력배양사업 지원 등 세계관세행정 동반성장을 위해 적극 협력해왔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행정 관련 국제표준을 선도함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WCO 회원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과 긴밀한 연대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활력 제고에도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

함께 성장 하는
정운 관세법인 입니다.

본 소식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소식지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아래 전화번호나 이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el : 02 - 511 - 5926
E-mail : DOC@JWCCS.COM